



피델리티 자산운용 주식회사  
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 
서울파이낸스센터 6 층  
(우) 100-768

Telephone: 02 3783 0901  
Fax: 02 3783 0085

문서번호 : FAMKL\_202012\_01

날 짜 : 2020.12.01

수 신 : 수신처 참조

참 조 :

발 신 : 피델리티자산운용(주)

제 목 :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내역에 대한 통보(1 개월공시) – 아세안 증권 CP

1. 귀 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 드립니다.
2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9 조 및 동 시행령 제 93 조 등에 따라 당사가 소규모펀드와 관련하여 수시공시 한 내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, 귀사의 수시공시 의무 (판매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, 전자우편을 이용한 투자자 통보,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등) 이행 등에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1. 소규모펀드 수시공시(2020.12.01.) 1 부. 끝.

피 델 리 티 자 산 운 용 (주)  
대표이사 권 준



수신처: 경남은행,교보생명,대신증권,메트라이프생명,미래에셋대우,상상인증권,신한금융투자,씨티은행,  
우리은행,유안타증권,이베스트투자증권,제주은행,키움증권,하나금융투자,한국포스증권,한화생명,  
한화투자증권,DB 금융투자,HSBC 은행,IBK 투자증권,KB 증권,KDB 생명,KEB 하나,NH 투자증권,SC 제일은행  
SK 증권

## 소규모펀드 수시공시(2020. 12. 01.)

자본시장법 제 89 조 및 동 시행령 제 93 조 제 3 항 제 4 호 및 제 5 호 등에 따라 소규모펀드 수시공시(1 개월)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- 아 래 -

공시사유 발생일: 2020 년 11 월 4 일

공시사항:

-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입니다.
- 자본시장법 제 192 조 제 1 항에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대상펀드: 아래 1 개 펀드

| 펀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협회표준코드       | 발생일 설정잔액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|
| 피델리티 아세안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 종류 CP | KR5235924085 | 101,178  |    |

\* 종류형펀드는 운용(통합)클래스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하위클래스 원본액이 50 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공시대상에 포함됩니다.

\* 모자형펀드는 자펀드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어도 관련 모펀드 원본액이 50 억원 이상이면 해당 자펀드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\* 모자형펀드는 자펀드 원본액이 50 억원 이상이어도 관련 모펀드 중 어느 하나라도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자펀드는 공시대상에 포함됩니다.

피 델 리 티 자 산 운 용(주)

대표이사 권 준